

창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3822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53822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2. 17 선고 2018가단107834 판결

##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택림

피고, 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22. 4. 7.

판결선고 2022. 5. 12.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2. 17. 선고 2018가단107834 판결

##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8. 10. 16. 체결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8. 10. 22. 접수 제175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1) D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4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D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8. 10. 16. 접수 제172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은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8. 10. 22. 접수 제175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B는 2021. 4. 6. 수원지방법원 2021나1244호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22. 1. 27. ‘피고 B로서는 늦어도 관련 소송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단107834호 사건에서 이 사건 제1심판결문을 서증으로 송달받은 2019. 2. 26.에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 B는 그로부터 항소기간 2주일이 경과한 2021. 4. 6.에야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피고 B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나.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 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7, 10호증, 을 제6호증“을 추가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 득 관, 판사 윤    정, 판사 이큰가람

별지